

제17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용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보고등) ① 금융기관은 용자상환,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 관리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직할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급에 관한 세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용자조례(1982. 1. 25 조례 제1537호)는 이를 폐지한다.

대구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동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기금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실천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 설치)
- 지방재정법 제29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2항

3. 주요골자

-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에 따른 목적, 조성방법, 관리방안, 용도등 운용요령 규정
-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관리·운용 방안 규정
 - 대상업체
 - 유망중소기업체, 특화산업체, 공업단지 입주업체
 - 소득 및 고용증대 업체, 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공동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용자조건
 - 한 도 : 업체당 1억원
 - 이차보전 : 3%내외
 - 기 간 : 1년(6개월 연장 가능), 일시 전액 상환
-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의 관리·운용 방안 규정
 - 대상업체
 -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등 3개부문 추진 중소기업
 - 기타 시장이 성장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
 - 용자조건
 - 한도 : 소요자금의 100%이내
 - 금리 : 연리 6%
 - 기간 :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체
 - 기업의 건설도 평가후, 성장가능성 및 사업타당성 중점 평가
 - 대기업 추천 또는 산업파급 효과나 기술의존도가 큰 업체는 가산점 부여
 - 대상선정 방법
 - 중소기업 구조개선 추진 지역본부에 설치된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선정 및 자금규모 결정
- 부칙 규정
 - 기존의 대구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용자조례 폐지

4. 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직할시 및 구청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② 대구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계정(이하 “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으로 구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④ 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관리·운용

제6조(용자대상업체) 운전자금의 용자대상업체는 대구직할시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
3. 공업단지 입주업체
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6.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7조(용자계획의 공고) 시장이 매년도초에 용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등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용자신청) ①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용자신청서(별지 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3. 중소기업 입증자료

②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을 경유할 때에는 구청장은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등 종합적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용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자대상 식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용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용자조건) ①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1억원내외로 한다.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내외로 낮게 정한다.

③제2항의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 용자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⑥ 용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추가용자) 금융기관은 인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용자할 수 있다.

제12조(용자금의 상환) ① 용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 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시장은 용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용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3장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의 관리·운동

제13조(용자대상업체)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등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구조개선자금으로 대구직할시내 사무소와 공장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화 추진 중소기업
2.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
3. 개발기술사업화 추진 중소기업
4. 자동화·정보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
5. 자동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
6.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
7. 기타 시장이 성장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

제14조(용자조건등) 구조개선자금은 용자대상업체의 신청금액 범위내에서 용자하되 용자조건,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용자금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용자계획의 공고) 구조개선자금의 용자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용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보고등) ① 금융기관은 용자상환,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 관리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직할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설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용자조례(1982. 1. 25 조례 제1537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용자조건

금리	용자기간	용자금액
연 6%	8년 이내(3년거치기간 포함)	소요자금의 100%

2. 용자대상 선정 기준

가. 용자대상

- 상공자원부가 정한 선정기준에 의한 6개유형업체(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등)를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되,
- 6개유형업체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 경북지부)와 사전 협의, 관내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나. 용자대상자 선정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체일 것
- 기업가의 경영사세가 건전할 것
- 금융거래가 정상적일 것

다.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 기업의 건설도를 평가한 후 성장가능성 및 사업타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기업건설도(100점)를 평가, 40점이상이고 대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성장가능성(60점) 및 사업타당성(40점)을 평가, 50점이상인 기업을 최종 선정
 - 복합유형은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등 기본유형선정기준을 동시 적용
- 대(모)기업 추천 또는 산업파급효과나 기술의존도가 큰 경우에는 가점 부여

3. 용자대상자 선정 절차

가. 상담 및 신청

-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 상담창구에서 신청상담 및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 필요시 자동화등 전문분야별 지원기관을 알선
-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후 접수

나. 서류심사

- 선정기준상 선정요건 및 기업건설도등을 일차적으로 심사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자는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보증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추천 이전에 신청인에게 통보
- 서류심사에 통과된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에 착수

다. 기업진단

- 사업유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진단팀을 지정
 - 기업진단팀은 경영담당1인, 기술담당1인으로 1개팀을 구성
- 대상기업에 사전통보후 현장실사 실시 및 진단평가표 작성

라. 선정위원회 심의 및 추천

- 기업진단팀의 진단평가표를 기준으로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여부 및 자금소요규모를 결정
 - 기업진단팀의 특별한 의견제시등 필요한 경우, 관계자 의견을 직접 청취
- 선정의 경우,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장이 당해기업,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 추천을 통보

4. 용자금 상환

- 용자금은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용 자 신 청 서

- 업 체 명 :
- 소 재 지 : (입주공단명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용자신청액 : 백만원
- 업 체 현 황 :

업 종 (주 생산 품)			자금거래은행			
인 간 매 출 액	내 수	수 출	공 장 규 모	대 지	동 평	평
	백만원	천불				
자 본	자기자본	백만원	종 업 원	생산직	명	명
	타인자본	백만원		사무직	명	
	계			계		

위와 같이 용자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 2. 공장등록증 사본1통

대 구 직 할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기간 :

○ 사업개요 :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소요자금 조달방법

- 자기자본
- 융 자
- 사 채
- 기 타

○ 융자금 상환계획

○ 기타

5. 기타 참고자료

가. 근거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 '93. 5. 30~6. 5(7일간)
- 방법 : 대구직할시 공보 제76호에 공고
- 공고 : 대구직할시 공고 제1993-87호

8. 大邱直轄市觀光工藝品및産業디자인開發育成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 審査過程

- 回附日字 : 1993年 6月 11日
- 提出者 : 大邱直轄市長(地域經濟局長)
- 上程日字 : 1993年 6月 16日

(第21回 大邱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産業委員會)